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2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김교흥·허종식·이훈기

모경종・이용우・노종면

허 영·강훈식·문진석

정일영 · 김원이 · 임광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·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.

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, 전력자급률이 212%(2022년 말 기 준 한국전력공사통계)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 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

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).

법률 제 호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중 "국가균형발전 등을"을 "지방자치단체 전력자립률(전력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)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5조(지역별 전기요금) 전기판	제45조(지역별 전기요금)		
매사업자는 <u>국가균형발전 등을</u>	지방자치단체 전력		
위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	자립률(전력수요를 지역 내에		
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	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		
작성할 때에 송전·배전 비용	한다)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-		
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			
리 정할 수 있다.			